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

목 차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적용)	4
제4조(제정 및 개정)	4
제2장 준법통제환경.....	4
제5조(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4
제6조(각 기관의 역할)	4
제7조(준법지원인의 임면)	5
제8조(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5
제9조(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6
제10조(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6
제11조(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7
제3장 준법통제활동.....	7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7

제13조(법적 위험의 관리)	7
제14조(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8
제15조(일상적인 준법지원)	8
제16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8
제17조(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9
제18조(내부제보)	9
제19조(위반 시의 처리)	9
제20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10
제4장 유효성 평가	10
제21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10
제22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10
제5장 기타	11
제23조(임직원의 포상)	11
제24조(세부사항)	11
부 칙	11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24. 4.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이하에서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이하에서 '준법통제기준'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각종 법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2. "법적 리스크"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손해·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등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 ①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장 준법통제환경

제5조(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6조(각 기관의 역할)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통제체제를 구축·정비·운영하고 그 운영을 감독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다.

제7조(준법지원인의 임면)

- 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③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자산규모가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지원인 법정선임 대상이 아닐 경우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표이사가 적정 인력(법무업무 담당부서 임원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 ①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③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 시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지원과 연관된 다른 업무를 일부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준법통제활동

제12조(법적 위협의 평가)

- ① 회사는 전사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제를 구축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법적 리스크의 크기·발생빈도 등 중대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주요한 법적 리스크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이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3조(법적 위협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협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지원인은 업무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법 교육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일상적인 준법지원)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상담·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 체결 등 법적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 ①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제17조(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 ①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점검이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한다.

제18조(내부제보)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 제도를 운영한다.
- ② 제1항을 위해서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위반 시의 처리)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유효성 평가

제21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한다.
- ②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유효성을 평가 시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체제·준법점검 및 보고체제·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①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장 기타

제23조(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행 예방과 축소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